

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심의결과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

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대상 기업(개인)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의거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.

2021년 07월 22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과제명 :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배로부터 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
기능성 화장품 개발

2. 처분 내용

대상자	제재 사유	법적근거	제재처분 심의결과
농업회사법인 (유)둔촌	연구 수행 결과 불량	· 「과학기술기본법(2018.04.17., 일 부개정)」 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등)제1항 ·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제1항 별표 4의2 및 별표 5 ·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)	참여제한 1년, 사업비 환수 (58,500천원)
이정주			참여제한 1년

3. 재검토 요청 안내(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)

○ 요청기간 :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

*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

○ 제출처(문의처)

기관명	농림축산식품부	부서명	과학기술정책과	담당자	최득수
전화번호	044-201-2458	팩스번호	044-868-0219	전자우편	choideuk@korea.kr
주소	(우 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				

○ 재검토 요청 방법

-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(농림축산식품부)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)를 작성.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유의사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검토요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※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			
제출인	성명 또는 기관명		
	주소(직장 또는 자택)		
	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		
	전화번호		
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정대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인 (해당 시 작성)	성명		
	주소(직장 또는 자택)		
	소속		
	전화번호		
소관 중앙행정기관명			
사전통지 문서명			
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	0000. 00. 00.		
증거 서류			
재검토 희망 기관(택일)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관 중앙행정기관		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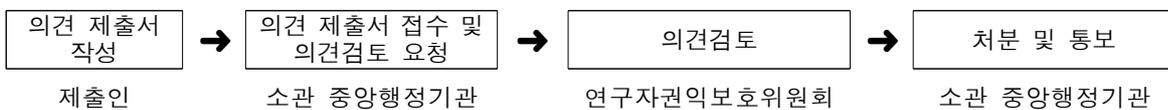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제출인 (인 또는 직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대표자, 관리인,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(대표자, 관리인,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) 2.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(별지),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
------	--

처리 절차



작성 요령(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

1. 제출인

- 1) 성명 또는 기관명: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- 2) 주소: 제출인의 거주지(주택, 직장 모두 가능)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3)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: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
2. 대표자, 관리인, 선정대표자, 대리인(해당 시 작성)

- 1) 대표자: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2) 관리인: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3) 선정대표자: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4) 대리인: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.

3. 소관 중앙행정기관명: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4. 사전통지 문서명: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.

5.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: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.

6. 증거 서류: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,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.

7. 재검토 희망 기관: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.

작성 요령(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

1. 사업명: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(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).
2. 연구개발과제명: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3. 연구개발과제번호: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(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).
1. 연구개발기관명: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4. 연구개발기간
 - 1) 전체: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.
 - 2) 해당 단계: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.
6. 연구개발비
 - 1) 전체: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,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 - 2) 해당 단계: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,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7.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: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,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,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.
8. 사전통지 문서명: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.
9. 제재처분 개요: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,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,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.
10.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: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.
11.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: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.
12. 의견 제출사유: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.